

부속서 I 주 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 8.13 조(비합치 조치) 및 제 9.6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.

가. 제 8.3 조(내국민 대우) 또는 제 9.2 조(내국민 대우)

나. 제 8.4 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 9.3 조(최혜국 대우)

다. 제 9.5 조(현지주재)

라. 제 8.9 조(이행요건)

마. 제 8.10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, 또는

바. 제 9.4 조(시장접근)
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
나. **관련의무**는 제 3 항에 규정된 대로, 제 8.13 조제 1 항가호 및 제 9.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 1 항에 언급된 조항(들)을 명시한다.

다. **조치**¹는 유보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. **조치**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

1)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·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
그리고

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,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. 그리고

라. **유보내용**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,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.

3. 유보항목을 해석함에 있어,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.

가. **조치** 요소가 **유보내용**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**조치**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리고

나. **조치**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, **조치**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**조치** 요소가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 8.13 조제 1 항 및 제 9.6 조제 1 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한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.

우선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,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 그렇게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.

4. 제 8.13 조제 1 항가호 및 제 9.6 조제 1 항가호에 따라, 그리고 제 8.13 조제 1 항다호 및 제 9.6 조제 1 항다호를 조건으로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**조치** 요소에 명시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5.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, 제 9.2 조(내국민 대우), 제 9.3 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 9.5 조(현지주재)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 8.3 조(내국민 대우), 제 8.4 조(최혜국 대우) 또는 제 8.9 조(이행요건)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.

6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현지주재(제 9.5 조)와 내국민 대우(제 9.2 조)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주재(제 9.5 조)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(제 9.2 조)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.